

신 「회사법」상 “수평적 법인격 부인”의 적용 경계에 관한 연구

— 책임재산의 위험화와 “각 회사” 범위의 제한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Horizontal Piercing of the Corporate Veil under the New Company Law: Focusing on the Endangerment of Liability Assets and the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Each Company”

장진호(张振浩)(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생)

Zhang Jinhao(Ph.D. Candidate,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Inha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문제 제기
2. 선행연구 현황과 한계
3. 연구문제,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II. 제 23 조 제 2 항의 규범구조와 해석 쟁점

1. 수평적 법인격 부인의 규범적 위치
2. “전항의 규정된 행위 실시”의 해석: 책임재산 위험화의 규범적 위치
3. 책임재산 위험화의 판단 틀
4. “각 회사”의 목적론적 축소해석
5. 증명책임의 분배

III. 전형적 사례 검토: 혼동 인정에서 책임 경계까지

1. 지도사례 제 15 호: 수평적 법인격 부인의 독자적 적용과 논증의 한계
2. 절용안: 재무혼동에서 변제 기초 훼손을 보여주는 참조 사례

3. 추림안: 관련회사 법인격 혼동을 신중하게 인정한 반대 경계 사례
4. 신법 이후 재판례 관찰: (2024) 민 04 민종 760 호 사건의 반대 사례적 의미
5. 네 사건의 대조: 재판 논리의 예비적 관찰

IV. 한국법의 참조: "동일성"에서 "개별 인정"으로

1. 한국법 관점에서 본 수평적 법인격 부인: 왜 참조할 가치가 있는가
2. 2002 다 66892 판결: 신설회사형 채무회피
3. 2017 다 271643 판결: 제 3 자 구조를 관통한 책임 확장 및 2010 다 94472 판결의 선행 확인
4. 2020 다 259704 판결: 동일 브랜드·주소·인원만으로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음
5. 중국법이 참고할 수 있는 점과 참고해서는 안 되는 점

V. 결론과 제도적 제언

1. 연구결론
2. 해석론상 보완 방향
3. 제도 조정상의 제언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문제 제기

회사는 자신의 재산으로 대외적 책임을 부담하고, 주주는 출자액을 한도로 위험을 부담한다. 이는 현대 회사제도의 기본 전제이다. 그러나 유한책임은 본래 채무회피를 위한 통로로 마련된 것이 아니다. 주주가 법인의 외피를 채무 차단 및 자산 이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법인격 부인은 예외적 남용이 아니라 남용행위에 대한 필요한 교정이다.

종래 중국의 법인격 부인 규칙은 주로 수직적으로 전개되었다. 즉 주주가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의 독립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주주가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2005 년 「회사법」 제 20 조 제 3 항은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의 성문법적 표현이다. 이에 비해 수평적 법인격 부인이 직면하는 구조는 훨씬 복잡하다. 동일한 지배자가 여러 회사를 지배하고, 채무는 그중 한 회사에 남아 있지만 자산, 거래기회 또는 영업수익은 다른 관련회사로 흘러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지배주주만을 추궁하는 것으로는 이미 이전되었거나 관련회사에 섞여 들어간 책임자산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¹²

신 「회사법」 제 23 조 제 2 항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하였다. 이 조항은 “주주가 그가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를 이용하여 전항의 규정된 행위를 실시한 경우, 각 회사는 어느 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수평적 법인격 부인의 규범적 지위를 높였고, 다수회사 구조 남용 사건에서 채권자에게 보다 직접적인 청구 근거를 제공하였다.³⁴

조문이 입법되었다고 해서 해석 문제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거 판례가 개별 사안의 재량으로 우회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제는 정면으로

¹「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2005 년 개정) 제 20 조 제 3 항은 “회사 주주가 회사 법인독립 지위와 주주의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고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해한 경우,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통상 중국법상 수직적 회사 법인격 부인 규칙의 성문법적 기초로 이해된다.

²李建伟：《关联公司法人人格否认的实证研究——以 144 例民事判决书的类型化分析为基础》，载《法商研究》第 6 期(2021)，第 103—115 页；黄辉：《公司集团背景下的法人格否认：一个实证研究》，载《中外法学》第 2 期(2020)，第 494—513 页。

³「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2023 년 개정) 제 23 조 제 2 항: “주주가 그가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를 이용하여 전항의 규정된 행위를 실시한 경우, 각 회사는 어느 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이 법은 2024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⁴본문은 주로 명의주주 또는 실제지배자가 다수회사 구조를 통하여 남용행위를 실시하는 경우를 논의한다. 비주주 실제지배자(예컨대 계약상 배열로 실제 지배하지만 명의상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자)가 제 23 조 제 2 항의 유추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주주” 개념의 확장해석 허용 여부와 관련되므로 본문에서는 전개하지 않는다. 관련 논의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2023 년 개정) 제 22 조의 실제지배자 정의 및 제 23 조 제 1 항의 “주주” 적용 논리를 참조할 수 있다.

답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관련회사 사이에 법인격 혼동이 존재하면 연대책임은 당연히 발생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연대책임의 발동 여부와 그 범위에 포함될 회사를 결정해야 하는가?

본문은 수평적 법인격 부인의 채권자 보호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적용 경계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려는 것이다. “각 회사”를 지배주주 명의 아래의 모든 회사로 읽고, “어느 한 회사의 채무”를 그룹 내부 채무의 일반적 상호보증으로 읽는다면, 제 23 조 제 2 항은 법인격 부인의 예외적 위치를 벗어나 그룹 구성회사 사이의 연대보증으로 변질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은 어떠한 조건에서 혼동 사실이 연대책임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한지, 그리고 어떤 관련회사가 “각 회사”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밝히고자 한다.⁵

2. 선행연구 현황과 한계

기존 연구는 여러 각도에서 수평적 법인격 부인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켜 왔다. 리젠웨이(李建伟)의 실증연구는 144 건의 민사판결을 표본으로 삼아 관련회사 법인격 부인 재판에서 인용률이 높고, 적용 요건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인용 근거가 혼란스럽다는 규칙적 문제를 드러냈다. 황후이(黄辉)의 회사그룹 배경에서의 법인격 부인 사건 312 건에 대한 실증분석은 혼동이 가장 자주 사용되는 법인격 부인의 이유이지만 법원이 통일된 기준을 세우지 못했음을 더 보여준다. 또한 그룹 배경에서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법인격 부인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정상적인 그룹 조직의 효율성도 해칠 수 있다. 스이펑(石一峰)은 동태적 판단의 관점에서 인적·업무·재무 혼동 요소를 정태적으로 열거하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되고, 행위·목적·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왕쑤난(王森南)은 신 「회사법」의 수평적 베일 관통 제도가 공동지배 기준 불명확, 수평적·수직적 관통의 적용 순위 불명확, 각 회사의 책임 범위 미전개 등 과제에

⁵王森南：《新〈公司法〉横向刺破公司面纱制度的挑战与对策》，载《金融法苑》第3期（总第113辑）（2024），第173—191页。

직면하고 있으며, 사법실무에서 원래 대리나 불법행위로 해결되어야 할 영역에 수평적 관통을 적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⁶

그러나 기존 연구에는 여전히 두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많은 연구가 “법인격 혼동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으며, 혼동 성립 후 연대책임을 어떻게 발동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취샤오통(曲晓童)의 연구는 이미 재판에서 인과관계 요건의 논증이 거칠고 손해결과 기준이 넓고 불일치한다는 문제를 주목하였지만, “법인격 혼동”과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해함” 사이에 조작 가능한 중간 판단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형성되지 않았다. 둘째, 제 23 조 제 2 항의 “각 회사” 책임 범위에 관하여 다수 연구는 확장 위험을 지적하였지만, 조작 가능한 책임주체 축소 기준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 왕썬난은 자매회사 이해관계자의 공평한 대우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각 회사”의 해석 방안은 더 전개될 여지가 있다.

실무에서 이 문제의 긴급성은 신 「회사법」 시행으로 더욱 두드러졌다. 제 23 조 제 2 항은 수평적 법인격 부인을 명문화하였고, 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제 1 단계인 “법인격 혼동의 성립 여부”와 제 2 단계인 “연대책임의 발동 여부” 사이의 관계를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기존 재판례 관찰에 따르면, 관련관계와

⁶선행연구의 대표적 성과는 네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실증연구:李建伟:《关联公司法人人格否认的实证研究——以 144 例民事判决书的类型化分析为基础》,《法商研究》2021 年第 6 期,第 103—115 页;黄辉:《公司集团背景下的法人格否认:一个实证研究》,《中外法学》2020 年第 2 期,第 494—513 页。

둘째, 동태적 판단과 경계 통제:石一峰:《关联公司人格否认动态判断体系的构建》,《环球法律评论》2022 年第 3 期,第 147—162 页;王森南:《新〈公司法〉横向刺破公司面纱制度的挑战与对策》,《金融法苑》2024 年第 3 期(总第 113 辑),第 173—191 页。

셋째, 일반화와 제한 연구:曲晓童:《公司法人格否认规则的适用泛化及其限缩》,《北京理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2026 年第 1 期,第 30 页以下。

넷째, 비교법과 한국 판례:최정식,「채무면탈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법인격 부인의 요건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 다 271643 판결」,『법학논총』 제 47 권, 2020, 931—955 면。

인적 교차는 책임재산 상태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당연히 대체할 수 없다. 피추급 회사가 혼동에 참여하였는지, 그로부터 이익을 얻었는지, 책임재산을 승계하였는지는 여전히 개별 사안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무상 필요에 조작 가능한 해석 틀을 제공하는 것이 본문의 출발점이다.

3. 연구문제,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본문의 핵심은 "법인격 혼동"과 "연대책임" 사이에 "책임재산의 위험화"라는 중간 판단을 도입하고, "책임주체의 개별 대응"을 통하여 "각 회사"의 범위를 축소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본문은 법인격 혼동 요소의 목록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혼동 성립 후 책임이 발동될 수 있는지 및 책임이 어떤 회사로 확장되는지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책임재산의 위험화"는 「회사법」 제 23 조 밖에 별도의 독립 요건을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채무회피"와 "회사 채권자의 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해석적으로 전개한 것이다. 그 목적은 "법인격 혼동"과 "연대책임" 사이의 중간 판단을 보충하여, 법원이 인적·업무·재무 교차만을 이유로 곧바로 관련회사에 연대책임을 명하는 것을 피하게 하는 데 있다.

본문은 주로 세 가지 문제를 다룬다. 첫째, 관련회사 사이에 인적·업무 또는 재무상의 교차가 존재할 때 연대책임을 당연히 추론할 수 있는가. 본문의 답은 부정적이다. 혼동 사실은 회사의 독립성이 약화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변제 기초가 이미 영향을 받았음을 직접 설명하지는 못한다. 법원은 사건 관련 혼동행위가 어떻게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불명확, 감소 또는 이전의 상태에 놓이게 하였는지를 더 설명해야 한다.

둘째, 제 23 조 제 2 항의 "각 회사"가 지배주주 명의 아래의 모든 회사를 포함하는가. 본문은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사건 관련 남용행위와 구체적 관련성이 있는 회사, 즉 참여·수익 또는 책임재산 승계를 한 회사만이 여기의 "각 회사"에 해당한다.

셋째, 한국 판례법은 어떠한 참조를 제공할 수 있는가. 본문은 한국법의 비교적 높은 주관적 의도 증명 문턱을 이식하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책임

확장 시 각 회사의 책임 기초를 하나씩 심사하는 한국 판례의 사고방식을 참고하여, 중국법상 “각 회사” 범위 제한에 비교법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상 본문은 제 23 조 제 1 항과 제 2 항 사이의 체계적 해석을 기초로 하며, 지도사례 제 15 호, 절용안, 추림안 및 한국 대법원 관련 판례를 결합하여 수평적 법인격 부인의 발동 문턱과 책임 범위를 논의한다.

II. 제 23 조 제 2 항의 규범구조와 해석 쟁점

1. 수평적 법인격 부인의 규범적 위치

수평적 법인격 부인과 수직적 법인격 부인은 모두 유한책임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양자가 직면하는 위험구조는 같지 않다. 수직적 법인격 부인은 일반적으로 주주가 회사를 채무회피의 도구로 삼는 문제를 처리하며, 책임의 방향은 주주가 회사채무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이다. 수평적 법인격 부인은 더 복잡하다. 채무는 여전히 어느 한 회사 명의 아래 남아 있지만, 자산·수익·업무기회 또는 변제능력은 다른 관련회사로 이전될 수 있다. 채권자가 재산을 추급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주주 개인이 도피했기 때문이 아니라, 재산이 여러 회사 사이를 이동한 뒤 귀속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다.⁷

따라서 제 23 조 제 2 항은 단순히 “관련회사 상호 책임”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조문에서 진정으로 결정적인 것은 “둘 이상의 회사를 지배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지배주주가 다수회사 구조를 이용하여 제 1 항이 말하는 남용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이다. 즉 그룹 지배관계는 적용 장면일 뿐이고, 채무회피와 채권자 이익 침해가 책임의 기초이다.⁸

⁷수직적 법인격 부인과 수평적 법인격 부인의 구조적 차이에 관하여는 朱慈蘊：《公司人格否认法理与实践》，人民法院出版社(2009)；李建伟：《关联公司法人人格否认的实证研究》，载《法商研究》第 6 期(2021)，第 103—115 页 참조. 신 「회사법」 제 23 조 제 2 항의 규범적 위치에 관하여는 赵旭东主编、刘斌副主编：《新公司法条文释解》，法律出版社(2024)，제 23 조 해설(第 113—114 页) 참조.

⁸ 赵旭东主编、刘斌副主编：《新公司法条文释解》，法律出版社(2024)，제 23 조 해설 부분(第 113—114 页). 해당 해설은 제 23 조 제 2 항의 적용이 지배주주가 “전항의 규정된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관련관계만으로 당연히 연대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지적한다.

2. “전항의 규정된 행위 실시”의 해석: 책임재산 위험화의 규범적 위치

제 23 조 제 2 항에서 가장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전항의 규정된 행위를 실시한다”는 것이 무엇을 포함하는가이다. 제 1 항은 단지 “회사 법인독립 지위를 남용한다”고만 말하지 않고, 동시에 “채무를 회피”하고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해한다”는 요건도 요구한다. 따라서 수평적 장면에서 인적·재무·업무 혼동 등 사실은 많아야 법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었음을 설명할 뿐이다. 그것이 이미 채무회피를 구성하는지, 채권자 이익을 중대하게 해하였는지는 계속 논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가 바로 “책임재산의 위험화”라는 분석 도구가 포착하려는 부분이다. 이는 법 밖의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채무회피”와 “회사 채권자의 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구체적으로 말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즉 사건 관련 혼동행위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왜 해당 채권자의 변제를 어렵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⁹¹⁰

따라서 수평적 법인격 부인은 적어도 두 단계로 나누어야 한다. 첫째, 회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정도의 혼동 사실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이러한 혼동이 책임재산의 위험화를 초래하였는지를 심사한다. 그 전형적 모습으로는 무상 또는 저가 자산 이전, 대금의 관련회사 계좌 유입, 장기간 계좌 공동사용, 회계장부 미분리, 자산 귀속 식별 불능, 거래수익의 실제 관련회사 귀속 등이 있다.

⁹본문은 “책임재산의 위험화”를 “채무회피”와 “회사 채권자의 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의 해석적 전개로 위치시키며, 회사법 제 23 조 밖에 별도 구성요건을 창설하려는 것이 아니다. 법인격 부인의 예외성과 검역성에 관하여는 朱慈蕴:《公司人格否认法理与实践》, 人民法院出版社(2009); 赵旭东主编、刘斌副主编:《新公司法条文释解》, 法律出版社(2024), 제 23 조 해설(第 113—114 页); 武胜男:《法人人格否认制度的司法适用》, 《金融法苑》2025 年第 2 期, 第 77—96 页 참조.

¹⁰재판에서 인과관계 요건의 논증이 거칠고 손해결과 기준이 넓고 불일치한다는 문제에 관하여는 曲晓童:《公司法人人格否认规则的适用泛化及其限缩》, 载《北京理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 1 期(2026), 第 30 页以下; 石一峰:《关联公司人格否认动态判断体系的构建》, 载《环球法律评论》第 3 期(2022), 第 147—162 页 참조. 이 문제가 바로 책임재산 위험화라는 중간 판단을 도입하는 현실적 동기이다.

본문에서 말하는 “책임재산의 위험화”란 관련회사 사이의 법인격 혼동 또는 자산유통 배열로 인하여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이 귀속 불명, 수량 감소, 지배권 이전 또는 변제능력의 실질적 약화 상태에 놓이고, 그 결과 특정 채권자의 변제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는 상태를 말한다.¹¹

“책임재산의 위험화”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문제를 지나치게 좁게 말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많은 사건에서 특정 자산 한 건이 직접 빠져나갔음을 정확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여러 회사가 장기간 계좌와 자산을 혼용하여 외부인이 어떤 회사가 재산을 보유하고, 어떤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며, 어떤 회사가 거래수익을 가져갔는지 전혀 판단할 수 없게 되는 데 있을 수 있다. 책임재산은 반드시 단일 지점의 감소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경계의 모호성 자체가 이미 위험상태를 구성한다.

“책임재산의 위험화”와 몇 가지 인접 개념 사이의 구별도 필요하다. “재산혼동”은 여러 주체 사이의 재산 경계가 불분명한 객관적 상태를 묘사하는 사실 차원의 판단이다. 반면 “책임재산의 위험화”는 이러한 혼동 상태가 특정 채무자 회사의 변제 기초를 식별 가능한 위험 속에 놓이게 하였는지를 더 묻는다. 전자는 후자의 전제조건이지만 후자와 동일하지 않다. “자산감소”는 통상 특정 자산량의 감소를 말하며, 구체적 이전 경로와 가치 손실의 증명을 요구한다. 그러나 “책임재산의 위험화”의 외연은 더 넓다. 특정 자산이 구체적으로 빠져나갔음을 증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자산 귀속을 식별할 수 없고 변제주체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 역시 책임재산의 위험상태를 구성한다. “채권 변제불능”은 손해결과로서 책임재산 위험화의 하류에 있다. “책임재산의 위험화”는 중간 층위로서 “재산혼동”보다 손해결과에 더 가깝고 “채권

¹¹이 정의는 「전국법원 민상사재판업무회의 기요」(法[2019]254 号) 제 11 조(관련회사 법인격 혼동의 일반적 모습, 예컨대 모자회사 사이의 이익 이전, 원회사 자금을 빼내어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 채무를 회피하는 경우 등)의 재판 논리를 참조하고, “법인격 혼동”과 “채권 변제불능” 사이에 중간 층위의 조작적 판단을 보충한 것이다. 武胜男:《法入人格否认制度的司法适用》, 载《金融法苑》第 2 期(总第 115 辑)(2025), 第 77—96 页。

변제불능”보다 더 이른 단계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아직 완전히 변제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도 개입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개념의 도입 목적은 조문 밖에 새로운 요건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채무회피”와 “회사 채권자의 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조작 가능한 중간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¹²

보충할 점은 “책임재산의 위험화”가 본문이 제시하는 학술적 분석 도구이지, 법원이 판결문에서 반드시 이 다섯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다. 진정한 요구는 법원이 제 23 조 제 2 항을 적용할 때 “혼동 사실 → 변제 기초의 영향 → 채권자 변제위험 증가”라는 논증 사슬을 실제로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혼동 발견—연대책임 명령”이라는 생략된 도약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개념의 학술적 표현과 재판상 조작화는 같은 층위의 문제가 아니다. 이른바 책임재산의 위험화는 실질적으로 현행 조문의 “채무회피”와 “회사 채권자의 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두 실질요건을 조작화한 것이며, 별도의 난관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¹³

가능한 반론은 책임재산 위험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채권자의 증명 부담이 높아져 오히려 제 23 조 제 2 항의 채권자 보호 기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은 책임재산 위험화가 채권자에게 모든 자산의 최종 귀속을 정밀하게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비정상적 자금흐름, 자산 승계, 장부 미분리, 거래주체 불일치 등 사실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는 증명의 정밀도 요구를 낮추는 것이지, 변제 기초의 훼손에 대한

¹²법인격 혼동과 재산혼동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钱玉林 : 《公司人格混同의认定及其法律后果》, 载《法学》第 4 期(2007), 第 117—126 页; 《全国法院民商事审判工作会议纪要》(法[2019]254 号) 第 11 条; 朱慈蕴 : 《公司人格否认法理与实践》, 人民法院出版社(2009), 제 2—3 장 참조.

¹³ 《全国法院民商事审判工作会议纪要》(法[2019]254 号) 第 10 条(회사 법인격 부인의 적용 원칙: 예외성, 검역성, 개별사안성). 「구민기요」는 법인격 부인이 “ 전면적·철저한·영구적 부인”이 아니라고 명확히 강조하는데, 이는 본문이 책임재산 위험화를 “해석적 전개이지 별도 요건이 아님”으로 위치시키는 입장과 부합한다.

실질 판단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판단을 완전히 생략하면 “각 회사”의 경계는 정할 수 없게 되고, 제 23 조 제 2 항은 오히려 과도한 확장 때문에 공허해질 수 있다.

3. 책임재산 위험화의 판단 틀

책임재산 위험화의 판단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출발할 수 있다.

우선 책임재산의 기초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았는지를 보아야 한다. 전형적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대금을 받은 뒤 곧바로 관련회사 계좌로 이전하였지만 진정한 거래 근거가 없는 경우, 채무자의 주요 자산이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된 경우, 여러 회사가 장기간 계좌를 공동 사용하면서 자금을 임의로 조달하고 자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 회사가 대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의무를 부담하였지만 거래수익은 실제로 다른 관련회사에 들어간 경우 등이 있다. 핵심은 채무 부담과 재산수익이 인위적으로 분리되었는지, 그리고 그 분리가 채무자 회사의 변제 기초를 약화시켰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¹⁴

시간 요소는 판단에서 실제적 의미를 가진다. 혼동행위가 채권 형성, 채무 변제기 도래 또는 소송 발생 시점에 가까울수록 그것과 변제위험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쉽다. 특히 채무가 이미 드러났거나 변제 압력이 나타난 뒤에도 채무자가 자금, 자산 또는 영업기회를 관련회사로 이전하였다면, 이를 더 이상 보통의 그룹 내부 배열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물론 시간 요소를 기계화해서는 안 된다. 어떤 관련거래가 채권 형성 전에 발생하였더라도 그 상태가 상대방의 거래주체 식별 또는 변제능력 판단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여전히 사실기초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이미 종료되었고 책임재산 식별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거 배열은 단독으로 연대책임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핵심은

¹⁴ 《全国法院民商事审判工作会议纪要》(法[2019]254号)第11条(관련회사 법인격 혼동의 일반적 경우: 모자회사 사이의 이익 이전, 원회사 자금을 빼낸 뒤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 채무를 회피하는 경우 등); 王森南:《新〈公司法〉横向刺破公司面纱制度的挑战与对策》,载《金融法苑》第3期(总第113辑)(2024),第173—191页。

언제나 해당 배열이 사건 관련 채권관계에서 채권자의 변제위험을 실제로 증가시켰는지에 있다.

다음으로 피추급 회사와 사건 관련 행위 사이의 관계를 보아야 한다. 어떤 관련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는 그것이 같은 그룹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것이 책임재산 위험화를 초래한 배열에 참여하였는지, 그로부터 이익을 얻었는지, 또는 원래 채무자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자산·업무·수익을 승계하였는지를 보아야 한다. 어떤 회사가 단지 같은 지배를 받지만 사건 관련 자금흐름, 자산 승계 또는 주체 혼용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룹관계만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기초 위에서 “책임재산 위험화를 구성하는 경우”와 “재산혼동은 있으나 아직 책임재산 위험화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를 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전형적 표지는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 식별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되었거나, 구체적인 자금·자산 또는 업무수익이 채무자에게서 유출되었지만 합리적 대가가 되돌아오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이다. 후자는 두 회사 사이에 임원 겸직, 장소 공동사용, 대외 홍보상 혼용 등 형식적 교차가 있으나 채무자 자신의 자산 경계는 여전히 명확하고, 그 책임재산의 수량·귀속·변제가능성이 이로 인해 식별 가능한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에는 혼동 사실이 책임재산 위험화의 범주에 들어가 연대책임 발동을 뒷받침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우에는 혼동 사실이 아직 재산혼동이라는 사실 차원에 머물 뿐 연대책임을 발생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이 구별이 바로 책임재산 위험화 개념이 단순한 “재산혼동” 인정에 비하여 갖는 독자적 조작 가치이다.

현실에서는 상당수 사건이 위 두 전형적 경우에 들어맞지 않고, 재산 경계는 이미 모호하지만 구체적 이전 경로를 증명할 수 없는 중간상태를 보인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원이 반드시 특정 자산의 정확한 행방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혼동 상태의 지속 기간, 피고가 소송 중 장부 설명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재무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정, 자금거래의 빈도와 규칙성이 정상적인 상업논리에 부합하는지, 채무자 회사의 대외적 변제능력 표시가 실제 자산상태와

심각하게 배치되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종합판단 경로는 제 5 절의 증명구조에서 “중간 강도의 단서가 피고의 설명의무를 개시할 수 있다”는 배열과 서로 호응한다. 이는 채권자가 초기 단계에서 증명을 모두 소진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피고가 설명을 거부한 뒤에는 모호한 상태 자체를 책임재산 위험화의 인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책임재산 위험화와 책임주체 범위는 서로 다른 두 층위의 문제이다. 전자는 연대책임이 발동될 수 있는지를 해결하고, 후자는 연대책임이 어떤 회사에까지 미치는지를 해결한다. 전자는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이 위험화되었는지를 보고, 후자는 각 피추급 회사와 사건 관련 혼동행위 사이에 개별 대응관계가 있는지를 본다.

4. “각 회사”의 목적론적 축소해석

제 23 조 제 2 항에서 가장 넓게 읽히기 쉬운 단어는 “각 회사”이다. 문언만 보면 “각 회사는 어느 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표현은 지배주주 명의 아래 모든 회사 사이의 상호 연대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면 제 23 조 제 2 항은 법인격 부인 제도의 예외적 성격에서 벗어난다.

회사 법인격 부인은 그룹 채무보증제도가 아니다. 그것이 정당한 이유는 법원이 구체적 남용행위를 교정해야 하기 때문이지, 그룹 구성원 지위 자체가 책임 기초를 갖기 때문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그룹 내부의 각 회사는 여전히 독립된 법인이고, 채권자가 어느 회사와 거래할지를 선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다수회사 구조가 채무를 회피하는 데 이용되고, 관련 회사가 참여·수익 또는 책임재산 승계를 하였을 때에만 법인독립을 돌파할 필요가 있다.¹⁵

¹⁵회사 법인격 부인의 예외성과 겸역성에 관하여는 朱慈蘊：《公司人格否认法理与实践》，人民法院出版社(2009)；《全国法院民商事审判工作会议纪要》（法〔2019〕254号）第10条；钱玉林：《公司人格混同的认定及其法律后果》，载《法学》第4期(2007)，第117—126页 참조.

“각 회사”의 제한 해석은 문언·체계·목적 세 층위에서 전개될 수 있다. 문언상 “각 회사”는 고립된 책임주체 개념이 아니라, “주주가 그가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를 이용하여 전항의 규정된 행위를 실시한 경우”라는 행위 요건에 의해 제한되는 결과적 표현이다. 조문이 설정하는 것은 특정 남용행위 배경에서의 연대책임이지, 그룹 구성원 지위에 근거한 일반적 상호보증이 아니다. 체계상 제 2 항은 제 1 항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제 1 항은 회사 법인독립 지위 남용, 채무회피, 회사 채권자 이익의 중대한 침해라는 세 요건을 동시에 요구한다. 제 2 항의 “각 회사” 범위도 이러한 요건의 구속을 받아야 하며, 사건 관련 혼동행위와 무관한 지배주주 명의 아래 모든 회사로 읽어서는 안 된다. 목적상 제 23 조 제 2 항은 다수회사 구조에서의 구체적 채무회피 배열을 교정하려는 것이지, 그룹 구성회사 사이의 일반 연대책임을 수립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항은 법인격 부인 규칙에서 그룹 내부 채무 상호보증 규칙으로 변질되어 유한책임 원칙의 기본 논리와 배치된다.¹⁶

그러므로 “각 회사”는 목적론적으로 축소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의 “각 회사”는 사건 관련 남용행위와 실질적 관련이 있는 각 회사로 이해되어야 하며, 지배주주 명의 아래 모든 회사를 의미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세 유형을 포함할 수 있다. 첫째, 자금혼동·계좌 공동사용·자산이전 또는 업무주체 혼용에 직접 참여한 회사. 둘째, 혼동행위에서 재산상 이익 또는 영업상 이익을 취득한 회사. 셋째, 채무자의 핵심 자산, 업무기회 또는 거래수익을 승계한 회사이다.¹⁷

¹⁶“각 회사” 책임 범위의 해석 위험에 관하여는 王森南：《新〈公司法〉横向刺破公司面纱制度的挑战与对策》，载《金融法苑》第3期（总第113辑）（2024），第173—191页；汇仲律师事务所：《姐妹不教孰之过？横向人格否认六大难题详解》，<https://www.huizhonglaw.com/Content/2024/01-10/1801004754.html>（访问日期：2026年4月24日） 참조.

¹⁷목적론적 축소해석의 기본 이유는 회사 법인격 부인이 유한책임 원칙의 예외이며, 일반적 그룹 연대책임으로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 朱慈蕴：《公司人格否认法理与实践》，人民法院出版社（2009）；钱玉林：《公司人格混同的认定及其法律后果》，《法学》2007年第4期，第117—126页；王帆、石冠彬：《论关联公司法人人格的否认》，《商业经济与管理》2023年第8期，第94—105页；另参见《全国法院民商事审判工作会议纪要》（法〔2019〕254号）第10条、第11条。

“어느 한 회사의 채무” 역시 사건 관련 남용행위와 분리하여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다수회사 구조가 남용되어 책임재산 위험화가 발생한 채무로 한정되어야 하며, 그룹 내 모든 구성회사가 대외적으로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각 회사가 어느 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표현은 그룹 구성회사 사이의 전면적 교차보증으로 읽히게 되고, 법인격 부인 제도의 예외적 위치와 배치된다.¹⁸

5. 증명책임의 분배

수평적 법인격 부인 사건에서 증거는 통상 채권자 수중에 있지 않다. 채권자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계약서, 지급증명, 공상등기, 대외 연락기록 등 외부 자료이다. 자금흐름, 내부 장부, 관련거래 근거 및 자산 귀속을 설명할 수 있는 진정한 자료는 대개 피고와 그 관련회사들이 보유한다. 여전히 채권자에게 혼동과 책임재산 위험화의 전 과정을 완전하게 증명하도록 요구한다면, 규칙은 종이 위의 구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증명구조는 세 단계로 처리할 수 있다. 첫째, 채권자가 초기 증거를 제출한다. 구체적으로 세 강도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낮은 강도의 단서는 공동 지배자, 임원 겸직, 동일 주소 또는 연락처를 포함한다. 중간 강도의 단서는 계좌 공동사용, 대금의 관련회사 유입, 계약주체와 이행주체의 장기간 불일치를 포함한다. 높은 강도의 단서는 무상 또는 저가 자산 이전, 핵심업무 승계, 채무를 변제능력 없는 주체에 남겨두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자가 적어도 중간 강도 이상의 단서를 제출해야 두 번째 단계인 피고의 설명의무가 개시될 수 있다. 둘째, 피고 관련회사는 합리적 설명을 하고 독립장부, 거래계약, 지급근거, 가격산정 근거, 회사 결의 등 자료를 제출한다. 셋째, 피고가 핵심증거를 보유하고도 제출을

¹⁸ 赵旭东主编、刘斌副主编：《新公司法条文释解》，法律出版社(2024)，제 23 조 해설(第 113—114 页). 그룹 채무 상호보증의 위험에 관하여도 王森南：《新〈公司法〉横向刺破公司面纱制度的挑战与对策》，载《金融法苑》第 3 期（总第 113 辑）(2024)，第 173—191 页 참조.

거부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비정상적 자금흐름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증명방해 규칙에 따라 불리한 추정을 할 수 있다.¹⁹

위 증명구조는 본문이 해석론 차원에서 제시하는 제안이며 현행 규칙에 대한 실증적 귀납은 아니다. 현행 법률과 사법해석은 수평적 법인격 부인 사건의 초기 증명 강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 「전국법원 민상사재판업무회의 기요」 제 10 조는 종합고려 경로를 취할 뿐 강도 단계는 설정하지 않았다. 본문의 세 강도 구분은 법원이 「구민기요」에 따라 종합판단을 하는 공간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종합판단 틀 안에서 “피고 설명의무의 개시 문턱”을 식별하기 위한 보다 조작 가능한 참조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그 목적은 채권자가 극히 낮은 강도의 단서만으로 피고에게 설명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막아 증명규칙의 실제 구속력을 유지하는 데 있다. 이 구분은 종합판단 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증명방해는 무조건적인 증명책임 전환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채권자는 여전히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초사실을 먼저 제출해야 한다. 피고가 핵심증거를 보유하면서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추정이 개시될 여지가 있다. 추정의 대상도 구별해야 한다. 먼저 법인격 혼동 성립을 추정할 수 있고, 이미 비정상적 자금흐름, 자산 승계 또는 업무 이전 등 초기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 다시 책임재산 위험화 성립을 추정할 수 있다.

III. 전형적 사례 검토: 혼동 인정에서 책임 경계까지

1. 지도사례 제 15 호: 수평적 법인격 부인의 독자적 적용과 논증의 한계

지도사례 제 15 호 “서공그룹공정기계주식유한회사 대 성도천교공무유한책임회사 등 매매계약 분쟁 사건”은 중국 수평적 법인격 부인 영역에서 피할 수 없는 사례이다. 서공주식은 천교공무에 대하여 매매계약채권을

¹⁹ 증명방해와 문서제출명령 관련 규칙에 관하여는 《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2019 年修正) 第 48 条(문서제출명령), 第 95 条(증거지배 추정); 张卫平: 《民事诉讼法》(第五版), 法律出版社 2022 年版, 第 259—265 页(제 15 장 제 9 절 “증명방해의 대책”) 참조.

가지고 있었으나 천교공무는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서공주식은 이에 천교공무의 관련회사인 루이루회사와 천교기계를 함께 피고로 삼아, 세 회사의 법인격이 혼동되었으므로 사건 관련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⁰

법원은 세 회사가 인적·재무·업무 측면에서 뚜렷하게 교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관리인원이 중복되고, 재무인원과 공상절차 담당자가 동일하였으며, 자금왕래가 빈번하고 공동계좌를 사용하였다. 또한 대외영업에서도 주체 혼용이 존재하여 거래상대방이 구체적 거래주체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웠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세 회사의 독립 법인격이 실질적으로 상실되었다고 인정하고, 사건 관련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시켰다.²¹

이 사건의 기여는 수평적 법인격 부인을 독자적 구제 경로로 확인하였다는 데 있다. 채권자는 지배주주 추궁으로 우회할 필요가 없으며, 관련회사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된 경우 관련회사에 직접 연대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제 23 조 제 2 항의 입법은 상당 부분 이러한 재판 경험을 흡수한 것이다.²²

지도사례 제 15 호는 그 시대적 배경에서 수평적 법인격 부인의 규칙 확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제 23 조 제 2 항과 같은 성문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그 논증의 중심은 주로 법인격 혼동의 인정에 놓였다. 대체로 “세 회사에 인적·재무·업무 혼동이 존재하므로 법인격 혼동을 구성한다. 법인격 혼동은 채권자

²⁰最高人民法院指导案例 15 号：徐工集团工程机械股份有限公司诉成都川交工贸有限责任公司等买卖合同纠纷案，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讨论通过，2013 年 1 月 31 日发布。最高人民法院官网页面：<https://www.court.gov.cn/shenpan-xiangqing-13321.html>，访问日期：2026 年 4 月 24 日。

²¹江苏省徐州市中级人民法院（2009）徐民二初字第 0065 号民事判决书；江苏省高级人民法院（2011）苏商终字第 0107 号民事判决书。지도사례 제 15 호 공식 페이지도 해당 사건의 재판결과와 재판 이유를 기재한다. <https://www.court.gov.cn/shenpan-xiangqing-13321.html>，访问日期：2026 年 4 月 24 日。

²²지도사례 제 15 호가 수평적 법인격 부인의 독자적 적용 경로를 확립한 의미에 관하여는 王帆、石冠彬：《论关联公司法人人格的否认：裁判反思和应然立场》，载《商业经济与管理》第 8 期(2023)，第 94—105 页；石一峰：《关联公司人格否认动态判断体系的构建》，载《环球法律评论》第 3 期(2022)，第 147—162 页 참조.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세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경로로 전개되었다. 혼동 사실이 채권자의 변제위험에 어떻게 더 연결되는지, 그리고 각 관련회사의 책임 범위가 왜 그렇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전개되지 않았다.²³

제 23 조 제 2 항이 입법된 이후에는 이러한 논증 방식이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판결은 적어도 혼동행위가 어떻게 책임재산을 위험화하였는지, 그리고 피추급되는 각 회사가 왜 “각 회사”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문상의 “각 회사”는 사실상 백지위임이 된다.

2. 절용안: 재무혼동에서 변제 기초 훼손을 보여주는 참조 사례

엄밀히 말하면 절용안은 전형적인 수평적 관련회사 법인격 부인 사건은 아니다. 이 사건의 책임구조는 주주와 회사 사이의 재무혼동, 즉 수직적 법인격 부인 문제에 더 가깝다. 그럼에도 본문이 이를 논의에 포함하는 것은 그것을 제 23 조 제 2 항의 직접적 적용 사례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이 법원이 자금흐름을 통하여 채무자의 변제 기초가 흔들렸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타이화닝보가 중커쉬능에 대금을 지급한 뒤, 관련 금액 중 소부분만 진정한 공급자에게 이전되었고 대부분은 곧바로 주주인 커위안플라스틱 계좌로 들어갔다. 커위안플라스틱은 진정한 공급주체도 아니었고, 해당 자금 이전에 진정한 거래 기초가 있음을 설명하지 못했다. 법원이 회사의 독립 법인격을 부인한 이유는 양자 사이에 주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아니라,

²³ 最高人民法院案例指导工作办公室：《指导案例 15 号〈徐工集团工程机械股份有限公司诉成都川交工贸有限责任公司等买卖合同纠纷案〉的理解与参照》，载《人民司法》2013 年第 15 期。本文主要依据最高人民法院官方发布页面：<https://www.court.gov.cn/shenpan-xiangqing-13321.html>（访问日期：2026 年 4 月 24 日）。

채무자가 취득한 거래자금이 합리적 근거 없이 주주 계좌로 흘러가 채무자의 변제 기초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²⁴

법원은 최종적으로 중커쉬능과 커위안플라스틱 사이에 재무혼동이 성립한다고 인정하고, 커위안플라스틱이 중커쉬능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회사 사이에 관련관계가 있다는 데 있지 않고, 채무자가 받은 대금이 합리적 거래 근거 없이 주주 계좌로 유입되어 변제 기초가 침식되었다는 데 있다. 법원은 “책임재산의 위험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논증의 실질은 “비정상적 자금흐름 → 채무자 변제 기초의 동요”라는 사슬을 따른 것이다. 수평적 법인격 부인에 대하여 이 판단방식의 참조 가치는 다음에 있다. 관련관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자금·자산 또는 업무수익이 채무자 회사에서 다른 관련회사로 흘러갔는지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재산 이동 또는 재산 경계 불명 사실이 없다면, 인적 교차나 영업상 관련성만으로는 여전히 연대책임을 뒷받침하기 어렵다.²⁵

3. 추림안: 관련회사 법인격 혼동을 신중하게 인정한 반대 경계 사례

지도사례 제 15 호가 수평적 법인격 부인의 성립 측면을 보여준다면, 흑룡강보웨이상업발전유한회사와 하얼빈추림그룹주식유한회사 및 하얼빈추림빌딩유한회사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분쟁 사건은 다른 측면을 제시한다. 법원은 기업 사이에 인원 중복 또는 관련 외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²⁴ 宁波市中级人民法院 (2015) 浙甬商外初字第 70 号民事判决书; 浙江省高级人民法院 (2016) 浙民终 599 号民事判决书. 본문의 사실과 재판이유 정리는 공개 판결문 및 관련 실무 자료에 근거한다. 판결은 타이화닝보의 지급 후 중커쉬능이 받은 대금 중 소액만 진정한 공급자에게 이전되고 나머지는 당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주주 커위안플라스틱 계좌로 이전되었으며, 커위안플라스틱이 진정한 거래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에 따라 중커쉬능과 커위안플라스틱 사이에 재무혼동이 성립하고, 커위안플라스틱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

²⁵ 절용안이 보여주는 “비정상적 자금흐름—변제 기초 동요” 판단방식은 법인격 부인의 검역성 연구의 기본 틀과 부합한다. 石一峰: 《关联公司人格否认动态判断体系的构建》, 载《环球法律评论》第 3 期(2022), 第 147—162 页; 王帆、石冠彬: 《论关联公司法人人格的否认: 裁判反思和应然立场》, 载《商业经济与管理》第 8 期(2023), 第 94—105 页。

법인격 혼동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최고인민법원 제 2 순회법원이 동북 노공업기지 진흥 지원 전형사례로 선정한 사건이며, 재판요지에서는 인적·업무·재무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관련회사 법인격 혼동을 신중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였다.²⁶

이 사건에서 보웨이상업회사와 추림주식회사 및 추림빌딩회사는 건물 및 토지사용권 양도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였다. 소송 중 어떤 당사자는 보웨이상업회사와 사건 외 메이다회사 사이에 법인격 혼동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보웨이상업회사의 총경리와 부총경리가 동시에 메이다회사의 법정대표자 및 주주라는 점에 주목하였지만, 이를 근거로 두 회사의 혼동을 직접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기존 증거만으로 법인격 혼동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보웨이상업회사와 메이다회사가 각각 자신의 계약관계에 따라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다.

추림안의 가치는 수평적 법인격 부인을 부정하는 데 있지 않고, 추론이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있다. 인원 중복, 주소 근접, 업무 관련성은 그룹 경영에서 드물지 않다. 재무 경계 불명, 자산 귀속 불명, 거래주체 혼용 등 더 나아간 사실이 없다면, 이러한 형식적 교차만으로 법인독립을 부인하는 것은 회사제도가 허용하는 조직상의 탄력성을 압박하게 된다.²⁷

4. 신법 이후 재판례 관찰: (2024) 민 04 민중 760 호 사건의 반대 사례적 의미

²⁶最高人民法院第二巡回法庭：《关于东北三省法院服务东北老工业基地振兴典型案例（2017）》，“黑龙江博瑞商业发展有限公司与哈尔滨秋林集团股份有限公司、哈尔滨秋林大厦有限公司房屋买卖合同纠纷案”。最高人民法院第二巡回法庭官网页面：<https://www.court.gov.cn/xunhui2/xiangqin-g-83142.html>，访问日期：2026年4月24日。

²⁷추림안이 종합판단과 관련회사 법인격 혼동의 신중한 인정을 강조한 점은, 「전국법원 민상사재판 업무회의 기요」(法[2019]254号) 제 11 조가 법인격 혼동 인정에서 “재산혼동”을 기초와 근본으로 삼는 입장과 일치한다. 黄辉：《公司集团背景下的法人格否认：一个实证研究》，载《中外法学》第 2 期(2020)，第 494—513 页。

현재 공개된 실무 관찰에서 정리된 재판례 표본을 보면, (2024) 민 04 민종 760 호 사건은 제 23 조 제 2 항 적용 경계의 반대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관련회사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 법인격 혼동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제 23 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은 푸젠성 산밍시 중급인민법원이 2024 년에 종국판결을 한 사건이며, 최종적으로 원고의 연대책임 주장을 배척하였다.²⁸

사건 사실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주로 동일 실제지배자, 관리인원의 상호 겸직, 사무장소 공동사용 및 대외 홍보상 주체 혼용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근거로 원고는 두 회사가 이미 “법인격 혼동”을 구성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관련회사에 연대책임을 명할 것을 청구하였다.

공개 실무 관찰에 따르면, 법원은 설시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두 회사 사이의 관련관계와 인적 교차를 설명할 수 있을 뿐, 위 혼동 배열로 인하여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았음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즉 혼동행위가 채무자의 변제 기초를 불명확하게 하였는지, 감소시켰는지 또는 이전시켰는지, 피고가 그로부터 대응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를 증명하지 못한 것이다. 책임재산 위험화 요건이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은 원고의 연대책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의 재판 논리는 본문 제 2 장에서 제시한 두 단계 판단 틀과 부합한다. 첫 단계에서 법원은 관련관계와 인적 교차의 존재를 확인하였지만, 그것이 심사 개시의 전제조건일 뿐 연대책임의 충분한 근거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²⁸공개 실무자료에 따르면, 福建省三明市中级人民法院 (2024) 闽 04 民终 760 号民事判决书는 제 23 조 제 2 항 수평적 법인격 부인 적용 문제를 다룬다. 공개 자료는 원고가 주로 동일 실제지배자, 인원 교차, 대외 홍보상 주체 혼용 등을 근거로 관련회사 연대책임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본문의 분석은 주로 康达律师事务所 실무 글의 재판요지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사실과 재판이유는 판결문 원문에 따라야 한다. 康达律师事务所: 《新公司法一周年争议解决实务回顾》, 2025 年, <https://www.kangdalaw.com/zh/insights/article/20250702> (访问日期: 2026 年 4 月 24 日)。

두 번째 단계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책임재산 위험화, 즉 혼동행위가 실제로 채무자의 변제 기초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더 증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이 증명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가 배척되었다. 이는 신 「회사법」 시행 이후에도 “혼동 발견 즉시 연대책임”이라는 재판 논리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책임재산 상태에 대한 실질 심사가 여전히 넘어갈 수 없는 단계임을 보여준다.

(2024) 민 04 민종 760 호 사건의 제도적 의미는 신법 시행 후 수평적 법인격 부인이 “성립하지 않은” 재판례 표본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이는 지도사례 제 15 호의 “성립 표본”과 대조를 이룬다. 어느 정도까지는 법인격 혼동의 인정이 수평적 법인격 부인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며, “각 회사”의 연대책임은 책임재산 위험화에 대한 추가 증명 위에 세워져야 함을 보여준다. 증명규칙의 관점에서도 이 사건은 주목할 만한 실무 문제를 제시한다. 채권자가 수평적 연대를 주장할 때에는 인적 교차와 관련관계 등 외부 증거 제출에 그쳐서는 안 되고, 자금흐름, 내부 장부, 자산 귀속 등 책임재산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련관계가 명백하더라도 연대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종합하면, (2024) 민 04 민종 760 호 사건은 적어도 하나의 경향을 시사한다. 신법 시행 후 쟁점의 중심은 “수평적 법인격 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서 “책임재산 위험화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및 “어떤 회사가 연대범위에 들어가는가”라는 두 조작적 층위로 이동하였다. 본문이 제시하는 두 단계 판단 틀은 바로 이러한 실무상 수요에 응답하여 재판자에게 조작 가능한 실시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점은 집행절차에서도 의미가 있다. 수평적 법인격 부인으로 발생하는 연대책임은 일반적으로 여전히 실체재판절차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집행단계에서 관련회사를 직접 추가할 수 없다.²⁹

5. 네 사건의 대조: 재판 논리의 예비적 관찰

네 사건을 비교하면, 재판 논리가 대체로 “혼동을 입구로, 책임재산 위험화를 문턱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지도사례 제 15 호에서 “각 회사”의 실제 범위가 왜 세 회사에 한정되고 더 많은 관련자로 확장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본문의 틀은 해석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각 회사”의 경계를 정밀하게 식별하는 조작적 세부 사항은 신법 이후 재판례 표본이 더 축적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문이 제시하는 두 단계 판단 틀은 이미 성숙한 재판규칙이라기보다는 검증을 기다리는 해석 방안에 더 가깝다.

IV. 한국법의 참조: “동일성”에서 “개별 인정”으로

1. 한국법 관점에서 본 수평적 법인격 부인: 왜 참조할 가치가 있는가

비교법적 참조의 전제를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한국의 수평적 법인격 부인의 규범 기초는 같지 않다. 중국법은 이미 제 23 조 제 2 항이라는 명문의 청구권 기초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법은 주로 판례를 통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틀 안에서 점진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아직 성문조항은 없다. 본문에서 말하는 한국법상의 “수평적” 법인격 부인은

²⁹채권자가 집행절차에서 직접 관련회사를 피집행인으로 추가하려는 청구는 법정 추가사유를 넘는다는 이유로 대부분 배척된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집행 중 당사자 변경·추가에 관한 약간 문제의 규정」(法释[2016]21 号, 2020 年修正)은 집행추가 법정주의를 취하며, 제 14 조부터 제 22 조까지 열거된 경우(회사 합병·분할, 주주의 출자부실, 1 인회사 책임전환 등)에는 「회사법」 제 23 조 제 2 항의 수평적 법인격 부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가 관련회사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더라도 실체재판절차를 통하여 확인해야 하며, 집행단계에서 곧바로 추가할 수 없다. 康达律师事务所:《新公司法一周年争议解决实务回顾》, 2025 年,

한국법에 중국 제 23 조 제 2 항과 완전히 대응하는 성문제도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한국 판례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이외의 관련회사에 책임을 추급하는 채무회피형 장면을 가리키며, 그 구조가 제 23 조 제 2 항이 처리하는 문제와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본문의 비교는 구성요건 차원의 규범 이식 비교가 아니라 책임 확장 통제 방법의 비교이다. 한국 판례의 참조 가치는 중국법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구성요건을 제공하는 데 있지 않고, 책임 확장 시 피추급 회사와 채무회피행위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을 어떻게 하나씩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

진정으로 참고할 만한 것은 한국 판례가 책임 확장 시 취하는 신중한 태도이다. 여러 회사가 명칭, 인원, 영업내용에서 매우 가까운 경우에도 법원은 자산이 이전되었는지, 영업이 승계되었는지, 기존 회사의 변제 기초가 비워졌는지를 더 심사한다. 단순한 관련관계, 외관상 유사성 또는 영업상 연관성은 한국 판례에서도 법인격 부인의 직접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다시 말해 한국법이 제공하는 것은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가”라는 답이 아니라 “책임의 과도한 확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중국 제 23 조 제 2 항의 “각 회사”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에 정확히 대응할 수 있다. 한국법은 주로 판례에 의하여 법인격 부인 규칙을 발전시켜 왔지만, 책임 확장 시에는 여전히 자산흐름, 영업승계 및 변제 기초의 변화와 같은 실질 요소를 강조한다. 이를 통하여 중국 제 23 조 제 2 항을 되돌아보면, 이미 성문법상 근거가 있는 상황일수록 인적 교차, 외관상 유사성 등 사실을 연대책임의 기초와 직접 동일시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³⁰

2. 2002 다 66892 판결: 신설회사형 채무회피

³⁰한국 법인격 부인의 비교법적 의미에 관하여는 최정식, 「채무면탈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법인격부인의 요건」, 『법학논총』 제 47 권(2020), 931—955 면 ; 권영애, 「채무면탈 목적으로 설립된 대체회사의 법인격 부인」, 『상사판례연구』 제 18 권 제 1 호(2005), 3—33 면 참조.

한국 대법원 2002 다 66892 판결은 일반적으로 수평적 법인격 부인의 중요한 판례로 이해된다. 이 사건의 기본 사고방식은 기존 회사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업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별도로 설립한 경우, 신설회사의 설립은 회사제도의 남용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신·구 회사는 기존 회사의 채권자에게 상호 독립성을 주장할 수 없고, 채권자는 두 회사 중 어느 쪽에 대해서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³¹

이 사건을 단순히 “두 회사가 유사하므로 서로 책임진다”로 읽어서는 안 된다. 형태의 유사성은 사실기초일 뿐이고, 법인격 부인의 정당성은 지배자가 신설회사를 통하여 영업, 자산 또는 이행능력을 이전시켜 기존 회사 채권자가 채권을 실현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데서 나온다. 채무회피의 목적이 책임 확장의 핵심이다.

중국 제 23 조 제 2 항과 대조하면, 조문의 “둘 이상의 회사를 지배한다”는 것은 책임 기초가 아니며 “전항의 규정된 행위를 실시한다”는 것이 책임 기초이다. 수평적 법인격 부인은 두 회사가 유사한지 또는 동일한 지배를 받는지만 물어서는 안 된다. 다수회사 구조가 채무회피에 이용되었는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그로 인해 위험화되었는지, 피추급 회사가 원래 채무자에게 속한 자산·영업 또는 수익을 승계하였는지를 계속 물어야 한다.

3. 2017 다 271643 판결: 제 3 자 구조를 관통한 책임 확장 및 2010 다 94472 판결의 선행 확인

2002 다 66892 판결 이후 한국 대법원은 채무회피형 법인격 부인의 적용 장면을 계속 확장하였다. 2010 다 94472 판결은 이 법리가 채무회피를 위한 신설회사 사안뿐 아니라 기존 회사를 이용하여 채무를 회피하는 사안에도 적용될

³¹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 다 66892 판결. 이 판결은 통상 채무회피형 법인격 부인 법리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이해된다. 관련 평석으로는 권영애, 「채무면탈 목적으로 설립된 대체회사의 법인격 부인」, 『상사판례연구』 제 18 권 제 1 호, 2005, 3—33 면 참조. 판결 원문은 한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사건번호로 검색 가능하다.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은 이용된 회사가 신설회사인지 기존회사인지에 있지 않고, 그것이 자산·영업 또는 책임재산 기초를 이전하는 데 이용되었는지에 있다.³²

2017 다 271643 판결은 더 복잡한 삼자 구조를 처리하였고, 본문의 비교법적 의미에 특히 직접적이다. 이 사건의 기본 사실은 기존 회사(A)의 핵심 영업자산이 피고 신설회사(B)에 직접 이전된 것이 아니라, 제 3의 관련회사(C)를 중간 고리로 거쳐 최종적으로 B 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원심법원은 자산 이전이 직접적이지 않으므로 B 가 반드시 법인격 남용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이 판단을 파기하였다. 그 이유는 핵심이 자산이 몇 단계 이전되었는지가 아니라, B 가 자산을 취득할 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그리고 A 가 이전 과정에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산 기초를 상실하였는지에 있기 때문이다. 중간 경로의 실질이 A 의 자산을 B 로 이전하면서 A 에게 보상하지 않는 것이라면, 형식상의 삼자 구조는 책임을 끄는 방패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은 이에 원심에 A 가 여전히 영업 중인지, 자산이 실제로 B 에 유입되었는지, B 가 정당한 대가로 취득하였는지 등 핵심 사실을 더 심리할 것을 요구하며 사건을 환송하였다. 이 판결의 요지는 본문의 “수평적 법인격 부인은 자산의 형식적 경로가 아니라 실제 유동 방향을 본다”는 주장과 높은 수준으로 부합하며, “피추급 회사는 사건 관련 자산유통과 구체적 대응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책임주체 판단기준도 확인한다.^{33,34}

³²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 다 94472 판결. 이 판결은 통상 채무회피형 법인격 부인 법리를 신설회사 유형에서 기존회사 이용 유형으로 확장한 것으로 이해된다. 판결 원문은 한국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또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에서 사건번호로 검색 가능하다.

³³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 다 271643 판결.

³⁴최정식, 「채무면탈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법인격부인의 요건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 다 271643 판결」, 『법학논총』 제 47 권, 2020, 931—955 면. DOI: 10.35867/ssulri.2020.47..029 ; KCI 页面: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ld=ART002593664>.

이 판례군의 시사점은 수평적 법인격 부인이 형식상의 회사관계가 아니라 자산·영업·책임재산의 실제 유동 방향을 본다는 데 있다. 중간에 제 3 자가 개입하더라도 경로를 관통하여 채무자 책임재산이 최종적으로 빠져나갔는지를 보아야 한다. 책임 확장은 구체적인 회사에 귀착되어야 한다. 누가 자산을 승계하였는지, 누가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누가 채무회피 배열에 참여하였는지가 확인되어야 그 회사가 연대범위에 들어간다.

한국법의 “개별 인정”은 채권자를 보호할 수 없을 정도로 보수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법원이 책임을 확장할 때 각 피추급 회사의 책임 기초를 분명히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중국법이 “각 회사”를 해석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제약이다.

4. 2020 다 259704 판결: 동일 브랜드·주소·인원만으로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음

2020 다 259704 판결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 사건에서 신설회사는 명칭, 표지, 웹사이트, 홍보자료 및 핵심인원 측면에서 모두 기존 회사와 매우 가까웠고, 외부 고객도 양자를 동일한 영업체로 이해하기 쉬웠다. 직관적으로 보면 이러한 사실은 신·구 회사 사이의 영업 연속성을 설명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원심법원은 이를 근거로 채무회피형 법인격 남용이 성립한다고 인정하였다.³⁵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외관상 유사성에 머물지 않고 몇 가지 더 핵심적인 문제를 계속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다. 기존 회사가 신설회사 설립 시营业을 이미 중단하였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기존 회사의 자금·설비·고객자원 또는 기타 영업자산이 실제로 신설회사로 유입되었는지, 신설회사가 관련 자산을 취득할 때 합리적 대가를 지급하였는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³⁵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 다 259704 판결, 판결요지 참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업의 상호·표지·웹사이트·홍보자료·핵심인원 등 외관의 연속성만으로는 채무면탈 목적의 법인격 남용을 인정할 수 없고, 기존 회사의 영업 상황 및 자산 현황, 신설 회사로의 자산 이전 여부, 정당한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판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사건번호로 검색 가능하다.

사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환송하였다. 이 사건의 초점은 “시장 외관상의 동일성”과 “책임재산상의 승계관계”를 구별하는데 있다. 명칭·표지·인원 등 외관요소는 두 회사가 시장에서 혼동되기 쉽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지만, 법인격 부인이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기존 회사의 변제 기초가 이전되었거나 비워졌는지이다.

자산 이동, 영업 승계 또는 무대가 취득 등 추가 사실이 없다면 외관상의 연속성만으로 채무회피를 인정하는 논증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는 중국의 추림안과 법역을 넘는 호응을 이룬다. 두 사건 모두 외관상 유사성이 책임 확장의 충분한 이유가 아니며, 수평적 법인격 부인은 반드시 변제 기초가 침식되었는지라는 실질 문제로 돌아가야 함을 보여준다.³⁶

5. 중국법이 참고할 수 있는 점과 참고해서는 안 되는 점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책임 범위 통제의 방법론이다. 한국 판례는 개별 판단과 개별 인정을 강조하며, 각 피추급 회사와 채무회피행위 사이의 구체적 관련성을 법원이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 방법은 수평적 법인격 부인이 그룹 전체 책임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막는 데 적합하다. 한국 판례와 결합하여 보면 보다 안정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자산을 승계하거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자금 유용에 참여하거나, 영업을 연속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채무자 회사 변제 기초의 약화에서 직접 이익을 얻은 관련회사만이 추급의 정당성을 가진다.

기계적으로 이식해서는 안 되는 것은 비교적 높은 주관적 의도 증명 문턱이다. 중국의 관련회사 사건에서 자금거래 내역, 장부자료, 관련거래 계약, 이사회 결의 등 핵심 자료는 통상 피고 측이 보유한다. 채권자에게 지배주주 또는 관련회사의 채무회피 의도를 직접 증명하도록 요구하면, 많은 사건은 증명불능의 곤경에 빠질

³⁶추림안과 한국 대법원 2020 다 259704 판결은 모두 외관상 유사성만으로 채무회피를 당연히 구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비교법 차원에서 서로 호응한다. 曲晓童:《公司法人格否认规则的适用泛化及其限缩》, 载《北京理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1期(2026), 第30页以下; 최정식, 「채무면탈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법인격부인의 요건」, 『법학논총』 제47권(2020), 931—955면.

수 있다. 따라서 중국법은 객관적 사실 추정과 증명방해 규칙을 결합하는 경로를 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채권자에게 피고의 주관적 의도를 완전하게 증명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초사실, 예컨대 대금의 관련회사 계좌 유입, 채무자 자산의 비정상적 감소, 관련회사의 핵심업무 승계, 계약주체와 이행주체의 장기간 불일치 등을 제시해야 한다. 그 기초 위에서 피고가 자금흐름, 거래기초 또는 자산취득의 합리적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그에 상응하는 불리한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해야 제 23 조 제 2 항이 채권자의 추심 편의수단으로 변질되지 않으면서도, 증명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 수평적 법인격 부인이 실제 기능을 잃는 것도 막을 수 있다.

특히 지적해야 할 것은 본문 제 3 장에서 소개한 추림안과 본장에서 분석한 2020 다 259704 판결이 재판 입장에서 매우 일치한다는 점이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명칭 유사, 브랜드 공동사용, 인원 중복, 주소 동일과 같은 외관적 요소가 변제 기초의 실질적 훼손 여부에 대한 심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관은 실질과 같지 않다”는 판단방식은 한국법만의 것이 아니라 중국법도 스스로 도달한 입장이다. 추림안과 2020 다 259704 판결의 상호 확인은 비교법이 이 지점에서 진정한 대화에 들어갔음을 보여준다. 이는 역외 규칙을 중국에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중 양국 판례가 독립적으로 동일한 해석 입장에 도달하였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법이 본문에 갖는 의미는 직접 이식할 수 있는 구성요건을 제공하는 데 있지 않고, 책임 확장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2002 다 66892 판결에서의 신·구 회사 사이 영업 승계이든, 2020 다 259704 판결에서 대법원이 자산흐름과 대가관계를 추궁한 것이든, 그 공통점은 책임 확장이 구체적인 회사와 채무회피행위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제 23 조 제 2 항에 대하여 이러한 사고방식은 두 가지 해석 요구로 전환될 수 있다. 첫째, 혼동 사실은 반드시 채무자 변제 기초의 훼손과 더 연결되어야 한다. 둘째, “각 회사”는 반드시 참여·수익 또는 책임재산 승계를 한 관련회사로 제한되어야 한다.

V. 결론과 제도적 제언

1. 연구결론

전문을 종합하면, 본문은 다음 세 가지 규범명제를 형성한다.

명제 1: 제 23 조 제 2 항은 그룹 채무보증 조항이 아니라, 다수회사 구조가 남용된 경우의 예외적 책임 확장 규칙이다. 그 발동은 구체적 남용행위를 기초로 해야 하며, 그룹 지배관계 또는 형식상의 법인격 혼동 때문에 당연히 연대책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명제 2: 수평적 법인격 부인의 발동은 인적·업무·재무 혼동 등 외관상 사실에 그쳐서는 안 되고, 혼동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변제 기초가 불명확·감소 또는 이전의 상태에 놓였는지를 더 심사해야 한다. “책임재산의 위험화”는 법 밖의 새로운 요건이 아니라, 제 1 항의 “채무회피” 및 “회사 채권자의 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해석적으로 조작화한 것이다. 이는 혼동 인정과 연대책임 사이의 중간 판단을 보충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명제 3: “각 회사”는 사건 관련 남용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관련회사, 구체적으로는 혼동에 참여하였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었거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승계한 회사로 한정되어야 하며, 지배주주 명의 아래 모든 회사로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제 23 조 제 2 항은 법인격 부인의 예외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고, 그룹 구성회사 사이의 일반적 연대보증으로 변질되지 않는다.

2. 해석론상 보완 방향

해석론상 법원이 제 23 조 제 2 항을 적용할 때에는 판결문에서 “혼동 사실 → 변제 기초의 영향 → 채권자 변제위험 증가”라는 논증 사슬을 실제로 완성해야 한다. 단순히 “법인격 혼동을 구성하므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만 써서는 안 된다. “각 회사”의 범위는 개별 사건에서 하나씩 심사되어야 하며, 혼동행위에 참여하였거나 혼동에서 이익을 얻었거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승계한 회사만이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각 회사”에 해당한다. 증명규칙상 채권자가 중간 강도 이상의 초기 증명을 완성한 뒤에는, 피고 관련회사가 자금흐름, 거래기초 및 재산

독립성에 대하여 합리적 설명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핵심증거 제출을 거부한다면, 법원은 증명방해 규칙에 따라 관련 사실의 성립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수평적 법인격 부인과 수직적 법인격 부인의 구별도 재판에서 주의할 가치가 있다. 지배주주의 책임과 관련회사의 책임은 병렬적으로 주장될 수 있으나 그 구성 기초는 서로 다르며, 서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

3. 제도 조정상의 제언

수평적 법인격 부인은 본질적으로 사후 구제의 문제만을 해결할 수 있다. 상장회사, 국유기업그룹 및 플랫폼형 기업그룹에 대하여 제 23 조 제 2 항은 관련거래 공시제도, 자금점유 감독규칙, 지배주주 및 실제지배자의 책임 등 전단계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개별 사건 재판에서의 책임 확장은 그룹 내부 관련거래 규범의 체계적 배열을 근본적으로 대체하기 어렵다.³⁷

재판에서는 두 방향의 편차를 경계해야 한다. 한편으로 지배주주가 다수회사 구조를 이용하여 채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임하는 것이 하나의 편차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룹회사를 일률적으로 공동채무자로 처리하는 것도 또 다른 편차이다. 제 23 조 제 2 항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려면 조문 자체의 강도보다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변제 기초가 훼손되었는지와 책임주체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지를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은 이것이 현재 이 조항에서 해석론상 가장 보충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³⁸

³⁷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2023 년 개정) 제 21 조(관련거래의 정보공시와 의사결정절차 요구), 제 22 조(실제지배자의 행위규범과 책임), 제 23 조(회사 법인격 부인, 수직·수평 두 항 포함). 위 조항들은 회사 거버넌스에서 관련자 행위를 규율하는 법적 체계를 함께 구성하며, 수평적 법인격 부인은 그 체계 내의 사후적 사법구제 단계로서 제 21 조와 제 22 조의 사전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대체할 수 없다.

³⁸ 赵旭东主编、刘斌副主编：《新公司法条文释解》，法律出版社(2024)，第 23 条 해설(第 113—114 页)；《全国法院民商事审判工作会议纪要》(法[2019]254 号) 第 10 条(법인격 부인의 예외성).

참고문헌

1. 국내문헌

<논문>

권영애, “채무면탈 목적으로 설립된 대체회사의 법인격 부인”, 『상사판례연구』 제 18 권 제 1 호, 2005.

최정식, “채무면탈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법인격부인의 요건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 다 271643 판결”, 『법학논총』 제 47 권, 2020..

2. 외국어문헌

[중국어]

<저서>

朱慈蕴：《公司人格否认法理与实践》，人民法院出版社，2009。

赵旭东主编、刘斌副主编：《新公司法条文释解》，法律出版社，2024。

<논문>

黄辉：《公司集团背景下的法人格否认：一个实证研究》，载《中外法学》第 2 期，2020，第 494—513 页。

李建伟：《关联公司法人人格否认的实证研究——以 144 例民事判决书的类型化分析为基础》，载《法商研究》第 6 期，2021，第 103—115 页。

钱玉林：《公司人格混同的认定及其法律后果》，载《法学》第 4 期，2007，第 117—126 页。

曲晓童：《公司法人格否认规则的适用泛化及其限缩》，载《北京理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 1 期，2026，第 30 页以下。

石一峰：《关联公司人格否认动态判断体系的构建》，载《环球法律评论》第 3 期，2022，第 147—162 页。

王帆、石冠彬：《论关联公司法人人格的否认：裁判反思和应然立场》，载《商业经济与管理》第8期，2023，第94—105页。

王森南：《新〈公司法〉横向刺破公司面纱制度的挑战与对策》，载《金融法苑》第3期（总第113辑），2024，第173页以下。

武胜男：《法人人格否认制度的司法适用——基于〈公司法〉与〈九民纪要〉的双重审视》，载《金融法苑》第2期（总第115辑），2025，第77—96页。

초 록

신 「회사법」 제 23 조 제 2 항은 수평적 법인격 부인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이번 회사법 개정에서 채권자 보호 규칙에 관한 중요한 변화이다. 이 조항은 "각 회사", "어느 한 회사의 채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문언을 그대로 넓게 해석하면 수평적 법인격 부인은 쉽게 그룹 구성회사 사이의 상호보증으로 읽힐 수 있다. 본문은 제 23 조 제 2 항의 적용이 인적 교차, 업무상 관련성 또는 재무거래와 같은 외관상 사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본다. 법원은 오히려 다수회사 구조가 이미 채무자 회사의 변제 기초를 불명확하게 하였는지, 감소시켰는지, 또는 이전시켰는지를 물어야 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본문은 이러한 상태를 "책임재산의 위험화"로 개념화한다.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각 회사"는 목적론적으로 축소해석되어야 하며, 혼동행위에 참여하였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었거나 또는 사건 관련 책임재산을 승계한 관련회사로 한정되어야 한다.

본문은 지도사례 제 15 호, 절용안(浙甬案), 추림안(秋林案) 및 신법 시행 후 제한적으로 공개된 재판례 관찰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한국 대법원 관련 판례를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수평적 법인격 부인의 책임 기초는 추상적인 그룹 구성원 지위가 아니라 자산 유용, 채무회피 및 책임주체 사이의 구체적 대응관계에 있음을 논증한다.

<주제어> 수평적 법인격 부인; 제 23 조 제 2 항; 책임재산의 위험화; "각 회사" 범위의 제한; 한중 비교법

A b s t r a c t

Article 23(2) of the new Chinese Company Law expressly codifies horizontal piercing of the corporate veil. While this provision strengthens creditor protection in multi-company abuse cases, its broad wording—“each company” and “the debt of any one company”—may easily be misunderstood as creating mutual guarantees among all companies under common control.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application of Article 23(2) should not stop at external indicators such as overlapping personnel, business connections, or financial dealings. Courts should further examine whether the multi-company structure has rendered the debtor company’s liability assets unclear, diminished, or transferred. This article conceptualizes that intermediate state as the “endangerment of liability assets.” As to the scope of liable entities, “each company” should be restrictively interpreted to include only affiliated companies that participated in the commingling, benefited from it, or received the relevant liability assets.

By analyzing Guiding Case No. 15, the Zheyong case, the Qiulin case, limited post-amendment judicial observations, and relevant Korean Supreme Court precedent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basis of horizontal piercing liability should not be abstract group membership, but the concrete correspondence among asset diversion, debt evasion, and the responsible entities.

Keywords: horizontal piercing of the corporate veil; Article 23(2); endangerment of liability assets;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each company”; China-Korea comparative law